

2002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번호	제138호
의결 년월일	200. 5. 15 (제104회)

제의년월일 : 2003. 5. 15.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
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
위원선임

2. 내 용

- 2002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

구분	소속	직위	성명	비고
대표위원	부천시의회	시의원	김덕균	○기획재정위원회 위원 ○제3대 의회 기획재정위원장
위원	오형철 회계사사무소	세무사	오형철	○'83~'89 국민은행 근무 ○동국대 무역학과 졸업
"	이상현 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이상현	○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○중앙대 경영학과 졸업
"	김태원 세무사사무소	세무사	김태원	○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○인천시립대 경제학과 졸업
"	시장추천자		이광양	○전 공무원(회계과장, 감사담당관) ○명지대학교 졸업

3.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개정 '99. 8. 31.>

(이하생략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6조 (결산승인)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<본조신설 99. 12. 31>

제46조의2 (감사위원의 선임) ①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,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'94. 7. 6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.<개정 '94. 7. 6, 99. 12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○ 부천시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제2조 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.

제3조 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(이하생략)

제6조 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,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

(이하생략)